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기금 용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재정용자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

나.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시 이행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10조의2)

다.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0.4.~10.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조례 규정”을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조례 규정”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에서 예외로”를 “위원회에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6조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용자기준) ①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 이라 한다)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따라서</u> ----- ----- ----- ----- ----- -----.</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수입금</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p> <p>3. · 4.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p>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조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 이란 제8조제1항에 의거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의 무) ①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  
-----  
제9조제1항-----  
-----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의 무) ①-----

----- 조례-----  
-----  
----- 위원회에서 -----

-----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용계획의 수립 등) (생략)

<신 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6조제2항에 비추어 적절한 지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  
---- 기금결산보고서-----  
-----.

②-----  
-----  
----- 30일-----  
-----.

제16조(용자기준) ①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신 설>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3. 미첨부 사유

- 규칙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연락처	(033) 330 - 2216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